

가스계량기 설치장소 환기기준 개정

- 환기가 가능한 창문 등이 설치된 장소로 완화 -

(개방 시 환기면적이 100cm² 이상)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주형환)가 지난 6월 16일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45조, '도시가스사업법' 제17조4항의 상세기준 개정안을 승인·공고하고 가스계량기 설치장소 환기 양호 기준을 합리화했다. 이전에는 '사람이 거주하는 건축물 세대 밖(복도, 계단 등)의 경우 창문 등을 열어 환기를 할 수 있는 장소'로 규정했지만 이번 개정을 통해 '환기가 가능한 창문 등(개방 시 환기면적이 100cm² 이상에 한한다)이 설치된 장소'로 완화했다.[편집자주]



■ 개정 코드 및 시행

- 개정코드 : KGS CODE FU551(도시가스 사용시설의 시설·기술·검사 기준)
- 공포 및 시행일 : 2016년 6월 16일

■ 개정사유

- 개정 전 수시 환기가 가능한 장소(창문 등이 있는 장소)에 가스계량기 설치로 가스사고가 발생한 사례는 거의 없으며, 해외 규정에도 실내 설치한 계량기에 대해서는 특별하게 규정된 바가 없거나(일본), 국내 실정과 맞지 않음(미국, 별도의 가스계량기실에만 환기구 설치 규정 있음)

일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스계량기를 파이프 덕트 내에 설치할 경우 환기구에는 100cm²이상의 유효면적을 가지는 것.
미국	<p>〈The New York City Fuel Gas Code〉</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스계량기실(Gas meter room)의 적절한환기를 위해서는 다음 중 어느 하나의 방법을 고려할 것 1) 자유면적 30in²(193.5cm²)이상으로써 외기와 통하는 환기구 2) 최소 50in²(322.6cm²)이상의 단면적을 갖고 최대 길이가 15ft인 외기로 통하는 덕트
	<p>〈Socal Gas Company사(캘리포니아주 남부지역 도시가스공급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Meter Room Requirement(계량기실요구사항) : 환기시스템은 다음의 환기율(air exchange rate)에 대한 능력을 갖출 것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연환기가 이용한 밀폐공간 및 계량기실은 5분 내 완전한 환기가 가능한 건물 내 출·입 환기구를 갖출 것(시간당 12회의 환기능력) - 강제환기를 이용한 계량기실은 시간당 6회의 환기능력을 갖출 것

- 동파우려와 열손실 및 추가경비 부담 등으로 인한 민원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필요

■ 개정내용

종전기준	개정기준('16.6.16 일부 시행)
<p>2.4.4.3.2 가스계량기의 설치장소는 다음 기준에 따라 설치한다.</p> <p>(1) 가스계량기는 검침, 교체, 유지관리 및 계량이 용이하고 환기가 양호하도록 다음의 어느 하나의 조치를 한 장소에 설치하되, 직사광선 또는 빗물을 받을 우려가 있는 곳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보호상자 안에 설치한다.</p> <p>(1-1) 가스계량기를 설치한 실내의 상부(공기보다 무거운 가스의 경우 하부)에 50cm² 이상 환기구(철망 등을 부착할 때는 철망 등이 차지하는 면적을 뺀 면적) 등을 설치한 장소</p> <p>(1-2) 가스계량기를 설치한 실내에 기계환기설비를 설치한 장소</p> <p>(1-3) 가스누출자동차단장치를 설치하여 가스누출시 경보를 울리고 가스계량기 전단에서 가스가 차단될 수 있도록 조치한 장소</p> <p>(1-4) 사람이 거주하는 건축물 세대 밖(복도, 계단 등)의 경우 창문 등을 열어 환기를 할 수 있는 장소</p>	<p>2.4.4.3.2 _____</p> <p>(1) _____</p> <p>_____</p> <p>_____</p> <p>(1-1) _____</p> <p>_____</p> <p>_____</p> <p>(1-2) _____</p> <p>_____</p> <p>(1-3) _____</p> <p>_____</p> <p>(1-4) <u>환기가 가능한 창문 등(개방시 기면적이 100cm² 이상에 한한다)이 설치된 장소</u></p>

■ 착안 사항

- 본 상세기준 공포일 이후 검사·점검 시 FU551 2.4.4.3.2(1-1)에 따른 “환기구”를 대신하여 “창문(개방 시 환기면적이 100cm² 이상에 한함)이 설치”된 경우에도 환기 양호한 장소로 인정 가능함
- 개정 기준 공포일 이전에 시공된 시설을 포함하여 검사·점검 시점부터 적용 가능함 